

이사회사록

서기 2011년 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동 30번지 벡센타이어주식회사 회의실에서 상법 제390조 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 사 총 수 : 4명

감 사 총 수 : 1명

출석이사수 : 4명

출석감사수 : 1명

의장 강병중은 오전 10시 정각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출석하였으므로 본 이사회는 상법 제391조 및 정관 제39조에 의거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고하고 개회 선언 후 다음 의안을 제의하여 심의를 구하다.

▣ 1호 의안 : 제53기(2010년)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 승인의 건

1) 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53기	제52기	증감율
자 산	925,880	791,426	17.0%
부 채	462,758	393,394	17.6%
자 본	463,122	398,032	16.4%
부채비율	99.92%	98.83%	1.09%P

2)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53기	제52기	증감율
매출액	1,080,302	966,207	11.8%
영업이익	101,829	162,201	-37.2%
법인세차감전순이익	97,291	141,830	-31.4%
당기순이익	76,743	114,325	-32.9%

▣ 2호 의안 : 현금 배당의 건

1) 1주당 현금 배당금

▶보통주 : 45원 (시가배당율 : 0.54%)

▶우선주 : 50원 (시가배당율 : 1.87%)

2) 배당금 총액 : 4,529백만원

▣ 3호 의안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1) 일시 : 2011년 2월 14일 (월요일) 오전 9시

2) 장 소 : 경남 양산시 유산동 30번지 (본사 강당)

3) 보고사항 : 영업보고, 감사보고

4)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53기(2010. 1. 1~2010. 12. 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상기 의안에 대해서 의장의 보충 설명이 있는 후 심의를 구한바, 출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상기 의안을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고 정기주주총회 개최에 따른 소집 통보 등 제반 절차는 의장에게 위임하다.

이어 의장은 이상으로서 금일의 의안이 종료하였음을 고하고 오전 11시 폐회를 선언하다. 위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감사 전원이 아래에 기명 날인하다.



2011년 1월 27일

넥센타이어주식회사

의 장 강병중



이 사 홍종만



이 사 이현봉



사외이사 전태준



감 사 김 수



첨부 : 정관 일부 변경의 件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제 2 조 (목적) 신설	제 2 조 (목적) <u>-수출대행업</u> <u>-각종 타이어 및 기타고무제품 제조에 관한 기술 용역업</u>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③ 신설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③ <u>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기타 경영상의 필요로 국내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u>
제 12 조(명의개서대리인) ②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제 12 조(명의개서대리인)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15 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 15 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u>2,000억원</u>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u>2,000억원</u>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u>2,000억원</u>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 16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 16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u>2,000억원</u>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u>2,000억원</u>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u>2,000억원</u>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 20 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증권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0 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u>한국거래소가</u>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2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이 정관은 <u>2011년 2 월 14 일</u> 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제3항, 제15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발행한도와 관련한 개정내용은 이 정관 시행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및 사채부터 새로이 계산한다.